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8월 13일,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9.1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9.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의원)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최초로 추진한 2022년도 1월 당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를 민간경

상보조비(320-01목)로 전용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예산부터 동 사업의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비(320-01목)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음.

따라서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되고 있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예산 편성·집행 방식과 법률상 위탁 근거를 일치시키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백종헌)

검역정보시스템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의무자에 시스템 운영 업

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안 제29조의2제5항).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제29조의2제5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검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 주체를 현행 ‘질병관리청장’에서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로 변경하고 있음.

그러나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을 의미하므로,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도 해당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의무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함 (안 제29조의2제5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의2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시스템”을 “질병관리청장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개정안과 같음)</u>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u>	<u>⑤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는 시스템-----</u> ----- ----- ----- ----- ----- -----	<u>⑤ 질병관리청장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u> ----- ----- ----- ----- ----- -----

야 한다.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	⑥ (개정안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⑦ (개정안과 같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질병관리청장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생략)	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⑤ 질병관리청장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u> ----- ----- ----- -----.
<u>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u>	<u>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 ----- -----.
<u>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u>	<u>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u> -----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	-----------------